

규정개정20200429

2020년 4월 29일에 공포된 [규정개정](#) 내역입니다.

□

목차

- [1 한양대학교 학칙 일부개정](#)
- [2 한양대학교 학칙 시행세칙\(I \)일부개정](#)
- [3 제2전공\(다중전공, 연계전공, 융합전공\) 시행세칙 일부개정](#)
- [4 미래인재교육원 학점인정과정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일부개정](#)
- [5 직제규정 일부개정](#)
- [6 사무분장규정 일부개정](#)
- [7 ERICA융합원 규정 제정](#)
- [8 ERICA 장학복지회 정관 일부개정](#)

한양대학교 학칙 일부개정

- 제3조 (별표1) [입학정원](#) 조정
 - [첨단학과](#) 관련 정원 조정 : [융합전자공학부](#), [컴퓨터소프트웨어학부](#), [데이터사이언스학과](#), [심리뇌과학과](#), [로봇공학과](#), [인공지능학과](#))
 - ERICA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인공지능학과 신설
 - ERICA 공학대학 로봇공학과 정원 증설
 - 첨단학과 신·증설에 관한 사항은 「대학설립·운영규정」 및 「고등교육법 시행령」 중 관련 조항의 시행일부부터 적용한다.

□□□□ □□□ □□ 2021□□□□ □□□□□□ 2804□ 2890□□□□, ERICA□□□□□ 1852□□ 1905□ □□□

- 제18조(재입학) 재입학 여석 허가 범위의 확대
 - 고등교육법 수준과 동일하게 조정
 - 제1항 '재입학은 해당학과(부) 정원의 여석 범위'를 '재입학은 정원의 여석 범위'로 정원 제한 문구 삭제
- 제47조 (별표2) [학사학위](#) 수여구분
 - ERICA [소프트웨어융합대학 인공지능학과](#) 신설 : 학위 - 공학사
 - [융합전공\(산업인공지능전공\)](#) 신설에 따른 추가 : 학위 - 공학사, 2020학년도부터 적용

한양대학교 학칙 시행세칙(I)일부개정

- 제6조([재수강](#) 및 [학점포기](#))
 - (ERICA) 필수 교과목 재수강 가능횟수 제한 해제
 - 기존 : 재수강 신청은 그 성적이 C+이하(F포함)이고 학수번호가 같거나 동일과목 또는 대치과목으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. 다만, ERICA캠퍼스 학생에 대하여는 과목당 재수강을 2회까지만 허

용된다.

- 변경 : (앞부분 동일 생략) 다만, ERICA캠퍼스 학생에 대하여는 과목당 재수강이 2회까지만 허용되나, 필수 교과목은 이수할 때까지 재수강 횟수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.

제2전공(다중전공, 연계전공, 융합전공) 시행세칙 일부개정

- 제7조(학위수여)
 - 제2전공 졸업요건 예외사항이 국방정보공학과 “해군 군가산복무지원금 대상자”에게만 적용될 수 있도록 명칭을 구체화하여 개정함
 - 기존 :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학대학 국방정보공학과는 제1전공의 졸업요건은 충족되었으나 제2 졸업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도 학업이 연장되지 않는다.

미래인재교육원 학점인정과정에 관한 시행세칙 일부개정

- 공결사유에 “원장이 승인하는 사유” 추가
- 추가시험 기한을 5일에서 7일로 연장
- 총장명의로 학사학위 수여 구분 추가 (컴퓨터소프트웨어학- 공학사)

직제규정 일부개정

- 제6조 부총장 직제규정에서 [ERICA부총장](#) 산하 [ERICA융합원](#) 신설

사무분장규정 일부개정

- ERICA부총장 산하 [ERICA융합원](#) 신설
- [교육성과관리센터](#) 사무분장 개정
- [대학원진흥팀](#) 사무분장 개정

ERICA융합원 규정 제정

- [ERICA융합원](#) 운영규정 제정 27

ERICA 장학복지회 정관 일부개정

- 장학복지회 소속(학생처에서 총무관리처로) 변경에 따른 임원 및 직원 변경
- 이사회 구성 변경
- 이사회 기능 변경
- 회계기준 변경 등